

環境農産物 品質認證 및 表示制度의 發展課題*

金 滸**

Development Issues of Certification and Labeling Systems for Products
by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e

Kim Ho**

〈목 차〉

- | | |
|----------------------------------|-----------------------------|
| I. 序 論 | IV. 環境農産物 品質認證 및 表示制度의 發展課題 |
| II. 環境農産物 品質認證 및 表示制度의 主要 內容과 節次 | V. 結論 |
| III. 環境農産物 品質認證 및 表示制度의 問題點 | |

I. 序 論

우리 나라에서 有機農業을 생산자조직 단위로 실천해 온 것은 正農會를 효시로 하여 약 20년 이상이 되었다. 그리고 環境農業 育成政策이 수립·추진되어 온 지 약 5년이 되었다. 또한 EU 및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有機農業 또는 環境親和的 農業에 대한 관심과 제도 수립에 노력하고 있다. 그 주된 내용은 유기농업 등 환경농업에 의해 생산된 農畜産物 및 食品의 生産基準과 流通過程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것은 환경농업의 環境保全 기능을 극대화시키고, 소비자에게 食品의 安全性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1993년 12월 1일부터 유기농산물에 대한 品質認證을 시작하였고, 1997년 3월 7일부터는 유기농산물의 表示制度를 도입하였다. 이것은 모두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1997년 12월 13일에 「환경농업육성법」이 제정되어 금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연구는 檀國大學校 大學研究費에 의해 수행되었음.

**檀國大學校 環境·資源經濟學科 助敎授.

그런데 이 法律이 시행되면, 유기농산물 등 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과 표시제에 대해 법적 근거가 이원화되기 때문에, 관련 법률간에 명확한 適用分擔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환경농산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 및 조치가 환경농업의 발전에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적용되도록 정돈되어야 한다. 또한 환경농산물 품질인증 및 표시제의 실시년수가 몇 년 지나지 않았는 바, 실시 과정에서 발생된 問題點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때가 된 것으로 생각된다. 문제점을 초기에 개선하는 것이 품질관리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環境農産物의 品質認證 및 表示制度의 주요 내용과 절차 및 체계에 대해 살펴보고 그 問題點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 및 발전방향과 향후 해결되어야 할 發展課題에 대해 고찰하였다.

II. 環境農産物 品質認證 및 表示制度의 주요 내용과 節次

환경농산물의 品質認證은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농산물의 表示制度는 금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규정에 따르게 되어 있다. 이러한 품질인증과 표시제도의 주요 내용과 절차 및 체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環境農産物 品質認證制의 주요 내용 및 認證體系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은 5장 2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크게 농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과 농수산물의 품질관리, 보칙과 벌칙 등이다. 그런데 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品質認證 관련 條項으로는 제13조(특산물 등의 품질인증제도)와 제14조(시판품의 조사 등), 제15조(표시변경 등의 처분), 제18조(유통관리전담기관의 지정) 등이 있다.

이 법률에 의거한 품질인증제는 주로 農林特産物과 傳統食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특산물이란 특정한 지역에서 생산하거나 특징적으로 생산한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특징적으로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7호)는 것이다. 그리고 전통식품이란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되고,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깔을 내는 식품(법 제6조 제1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環境農産物은 '특징적으로 생산한 농산물'의 일종으로서, 일반농산물 및 전통식품 등과 함께 품질인증의 대상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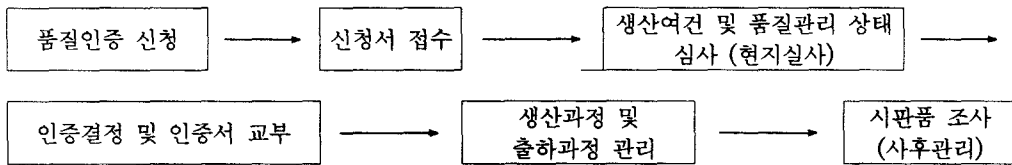
또한 이 법률에 의거한 「유기농산물의 품질관리요령」(1998년 7월 29일 제정고시)은 6장 2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작물의 재배관리와 생산물의 관리, 표시방법, 자료의 관리 및 확인, 시판품 조사 등이다.

그리고 品質認證 區分은 유기재배, 무농약재배, 저농약재배, 일반재배 등 4가지로 되어 있

다. 전환기 유기농산물의 경우, 품질인증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포함되어 있었으나, 농가의 호응이 적어 나중에 삭제되었다.

品質認證 節次를 보면, 생산자의 인증신청에 따라 생산여건과 품질관리 상태를 심사한 후, 인증여부를 통보하고 생산 및 출하과정에 대한 조사를 거쳐 적격품에 한해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출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후관리로서 시판품의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바, 유통과정에서 그 내용물과 표시사항간의 일치여부를 조사한다. 만일 조사결과 품질인증 표시위반 등 이상품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品質認證 體系는 <그림 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다. 품질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生産者는 품질인증 신청서와 생산 및 출하여건 개요서, 품질준수 각서, 환경농업단체 등이 발급한 유기재배 품질인증 추천서 등을 제출한다(표 1). 그런데 認證申請은 영농조합법인이나 생산자단체 또는 작목반 명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때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인으로 하고 대표자는 구성원의 재배상황을 '생산자 및 품종확인서'에 모두 기록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체 管理責任者를 지정하는 바, 그 임무는 소속농가의 인증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영농일지의 기록 및 작업통보 등 인증농가가 지켜야 할 사항의 준수, 소속농가가 인증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통보 등이다.



<그림 1> 품질인증 체계

자료 : 국립농산물검사소, 「환경농산물 관리 및 품질인증제 추진방향」, 1998.

<표 1> 품질인증 신청기한 및 제출서류

종 류	신 청 기 한	제 출 서 류
○곡물류 ○채소류 ○특용작물류	○파종 30일 전까지	○생산 출하여건 개요서 1부 ○품질준수 각서 1부 ○재배약정·생산자 및 품종확인서 1부 ○품질인증추천서 1부
○과실류 ○임산물류	○매년 1월 31일까지	○재배포장 약도 또는 지적도 1부 ○기타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

자료 : 국립농산물검사소, 「유기농산물의 생산관리」, 1996.

農産物檢査所는 이 신청서를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심사에 착수하여 10개 항목에 대해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표 2). 해당 농가와 포장 및 생산시설에 대한 현지실사와 토양중금속, 유기물 함량, 농업용수의 수질검사 등 성분분석에 필요한 항목은 농산물검사소 시험소 또는 공인시

협기관의 검사성적을 근거로 하여 평가한다.

10개 심사항목 가운데 認證 適合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수'로 평가된 항목이 5개 이상이고, '미'로 평가된 항목이 2개 이하이며, '양'은 전혀 없어야 한다. 그리고 條件附 認證은 심사결과 미흡한 사항이 일정기한 내에 보완이 가능할 경우로 한다.

인증적합으로 판정되면 品質認證書를 교부하며,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교육한다. 즉, 품질인증 조건 및 기준의 준수, 재배관리 사항 등 영농일지의 기록(3년 이상 보관), 영농계획의 변경 또는 생산중단과 병충해 방제를 위한 농약살포·시비·수확·가공 등의 영농작업이 있을 때 사전 농산물검사소에 대한 통보, 인증품 출하 및 포장재 관리대장에 품질인증 표지가 인쇄된 포장재의 사용내역과 출하상황 기록, 품질인증 재배포장임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 설치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品質認證 有效期間은 1년으로 한다. 그런데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은 생산자로서, 인증 당시의 항목 및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계속 인증한다.

<표 2> 품질인증 심사항목

구 분	심 사 항 목
○일반여건	① 생산자 자질, 조직 및 능력 ② 산지 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신용도 ④ 출하여건 및 판매처 확보
○생산여건	① 생산포장입지 ② 생산기술수준 ③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 등) 등
○품질관리여건	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등

자료 : 국립농산물검사소, 「유기농산물의 생산관리」, 1996.

한편 生産過程의 管理를 위해 인증농가와 재배포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인증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예컨대 계약재배 필지·면적 및 재배품종 등 약정이행 사항, 세부적인 재배상태 및 영농일지 기록여부, 재배포장 환경조사 등이다. 이같은 現地調査는 품질인증 구분인 유기재배, 무농약재배, 저농약재배, 일반재배 등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또한 出荷過程의 管理는 재배품종별 적기 구분수확 및 비인증 포장에서 생산된 생산물의 혼입여부 등에 대한 것이다. 저장 및 보관은 원료의 품종별 구분 보관 및 관리에 대하여 확인한다. 출하단계에서는 품질인증 재배포장에서 생산되었는지 여부와 비인증품의 혼입여부, 출하품의 등급기준과 적합여부 등에 대해 관리한다. 그리고 事後管理로서, 소비지유통 단계에서 농약의 잔류검사 등 시판품 조사를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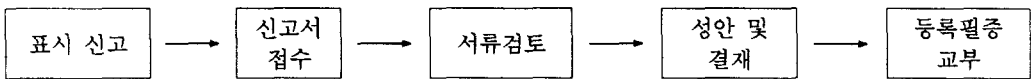
2. 環境農産物 表示制度의 주요 內容 및 體系

지금까지 環境農産物 表示制度는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실시되었다. 그러나 금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되는 「환경농업육성법」이 제정됨으로써, 이 법률에 의거하여 실시될 예정이다.

이 法律은 5장 2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환경농산물의 표시에 관한 조항은 제17조(환경농산물의 표시사용)와 제18조(시판품의 조사 등), 제25조(벌칙) 등이다. 이 법률에서 環境農産物의 分類(제16조)는 일반환경농산물, 유기농산물, 전환기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 등 5가지로 되어 있지만, 그 表示 使用(제17조)에서는 일반환경농산물을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환경농산물의 표시란 포장·용기 등에 환경농산물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를 말한다.

施行規則(案)에 의한 환경농산물의 表示節次를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표시 사용을 하고자 하는 생산자는 사용할 표시, 품목, 재배면적, 생산(계획)량, 생산기간, 출하기간, 포장소재지 등의 신고내용과 토양관리방법, 비료사용량(300평당), 농약사용량(300평당) 등 생산방법을 기재하여 생산지역을 관할하는 농산물검사소 지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申告書를 제출한다.

그리고 지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접수된 신고사항이 환경농산물 생산자재의 사용 및 품질 등에 대한 구체적인 基準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그리하여 이에 적합한 때에는 소정의 申告畢證을 교부하며, 만일 검토결과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表示方法은 유기재배로 생산한 농산물은 '유기농산물 또는 유기농○○', 전환기 유기재배는 '전환기 유기농산물 또는 전환기 유기농○○', 무농약 농산물은 '무농약 농산물 또는 무농약○○', 저농약 농산물은 '저농약 농산물 또는 저농약○○'(○○은 농산물의 일반적 명칭)으로 한다.



<그림 2> 환경농산물 표시 절차

자료 : 농림부, 「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시행규칙(안), 1998

이같이 환경농산물의 표시사용은 生産者의 申告制로 되어 있다. 또한 표시도형을 사용할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유기농산물과 전환기 유기농산물 표시의 경우에는 농촌지도소장 또는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환경농업민간단체의 장이 발급하는 經歷證明書를 첨부하게 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環境農業民間團體'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다른 조항에 의하면, 환경농업의 연구와 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촉진의 목적을 위해 구성된 민간단체(제5조)로서, 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

는 기술과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법인으로서는 환경농업분야에서 생산·유통·교육 등의 활동실적이 3년 이상인 단체(제14조)를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농산물의 표시를 신고제로 함으로써 生産者의 自律性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였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판매되는 환경농산물을 수거하여 품질기준의 적합성 등 시판품의 조사와 생산과정에서의 필요한 조사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 시험 의뢰 등을 통하여 品質管理를 실시하고자 한다. 시행령(안)에 규정되어 있는 生産過程의 調査는 표시사용 신고자가 환경농산물의 생산기준과 세부적인 관리기준을 준수하는지의 여부에 관해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즉, 市販品을 수거·조사 또는 시험을 의뢰한 결과, 환경농산물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되는 환경농산물에 대해 생산과정을 조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농산물의 표시 신고제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罰則條項(제25조와 27조)이 적용된다. 먼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있다. 예컨대 표시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포장·용기 등에 환경농산물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이다. 또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거나 환경농산물의 품질기준(생산자재 사용 및 품질 등에 대한 기준)을 위반한 농산물에 해당 표시를 하여 판매함으로써, 3년 이내의 정해진 기간 동안 표시사용의 중지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경우가 있다. 뿐만 아니라 표시사용 중지 기간이 만료된 자가 표시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고 표시를 사용한 경우이다.

다음에, 표시사용과 관련하여 300만원 이하의 過怠料가 부과되는 벌칙이 있다. 예컨대 환경농산물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한 경우와 환경농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판품 및 생산과정 조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등이다.

Ⅲ. 環境農產物 品質認證 및 表示制度의 問題點

품질인증과 표시제도는 不可分의 關係에 있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는 각각 별도로 분리되어 관리하게 하고 있으며, 업무 관리 담당부서도 상이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품질인증제와 표시제의 問題點에 대해 각각 분리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1. 品質認證制의 問題點

현재 시행중인 품질인증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품질인증을 위한 시험·검사와 생산 및 출하과정을 조사할 專門人力이 부족하다. 정부 기구의 축소로 인해 인증을 주로 담당해온 농산물검사소 및 지소의 인력이 감소되었다. 그리하여 품질인증 신청에 대한 업무처리가 현저하게 지연되고 있다. 또한 앞으로 환경농산물 인증을 위한 10개의 심사항목에 대한 현지실사와 생산과정 및 출하과정의 관리, 품질관리 등이 형식적

· 피상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둘째, 民間團體가 품질인증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시설과 인력 등의 要件을 갖추고 있지 않다. 환경농산물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는 각각 생산과 유통 등 경제적인 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품질인증에 필요한 설비 및 기자재의 마련이나 인력을 확보하기에는 재정적 및 기술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최근들어 IMF 관리체제하 實質國民所得이 감소함에 따라 所得彈性이 높은 환경농산물의 소비가 정체됨으로써, 이러한 단체들의 收益性이 대체로 저하되고 있다. 또한 단체별 환경농산물의 생산방식이나 품질 및 상품의 특성의 차이에 대해 消費者가 뚜렷하게 인식하고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뿐만이 아니라 단체들의 환경농업단체연합회를 중심으로한 結束力도 크지 않고, 더욱이 단체별 이해관계를 앞세움으로써 업무추진에 있어 窓口的 一元化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품질인증의 민간단체에 대한 전격적인 위탁 또는 이양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된다.

셋째, 輸入 有機農産物의 품질인증에 대한 管理規程이 미비되어 있다. 소비자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인식의 제고에 부응하여, 일부 대기업에서 수입·가공하여 판매하는 예가 늘고 있다. 또한 환경농산물의 수요가 더욱 확대되면, 이같은 유기농산물의 수입은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에 대한 관리규정이 없어 검사할 방법이 없다.

넷째, 품질인증에 요구되는 재배면적 및 생산(출하)량 조건이 輪作 및 多品目 소량 생산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어떤 일정한 포장에서 매년 서로 다른 작물의 종류를 순차적으로 조합·배열하는 방식의 작부체계인 윤작은 잡초방제와 병해충 발생억제 효과, 지력의 유지 등에 유효하다. 또한 포장내의 혼작, 간작, 공생식물의 재배 등 작물체 주변의 천적활동을 조장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품목 소량 생산을 실시하는 환경농가가 늘고 있다. 그러나 品質認證은 한 포장에서 한 품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이듬해 윤작을 목적으로 그 포장에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에는 또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다섯째, 품질인증을 신청한 농가가 소속되어 있는 생산자조직내의 자체 管理責任者의 임무가 과중하다. 인증은 생산자조직 명의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소속농가에 대한 인증기준 준수의 지도 감독, 영농일지 기록 및 작업통보 등의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환경농업은 勞動集約的인 농법인 바, 이것은 관리책임자의 영농 및 판매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여섯째, 품질인증을 받은 환경농산물에 대한 消費者의 認識度가 낮다. 이것은 주로 환경농업

1) 실질국민소득의 평균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의 환경농산물 매출액은 오히려 증가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현상은 이 단체의 주요 고객이 주로 고소득층임을 반증해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IMF체제하에서 실질적으로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는 바, 고소득층의 부는 오히려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득계층을 상대로 하고 있는 단체의 경우에는 소득탄력성이 높은 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세한 환경농산물 소비자단체에서는 매출의 정체 또는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

2) 환경농업 관련 생산자 및 소비자 민간단체의 수는 공식적으로 약 200여개 정도로 추산된다. 그리고 이러한 각각의 민간단체는 그 규모면에서 천차만별이다. 몇몇 대규모 생산자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는 자체 품질인증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규모 민간단체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관련단체의 품질인증제에 대한 弘報 不足과 환경농산물의 일반유통기구를 통한 판매량의 소규모에 기인한 바 크다. 또한 품질인증 마크의 크기가 적거나, 표기위치가 포장지의 구석에 치우쳐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환경농산물의 폐쇄적인 거래관행이나 거래량 측면에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 즉 환경농산물의 유통이 소비자단체 명의로 회원간에 직거래되고 있고, 또 일반소매기구에서 거래되는 물량이 적을 뿐 아니라, 불특정 소비자는 유통업체명(예컨대 풀무원 등)에 대한 신뢰에 근거하여 구매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2. 表示制度의 問題點

환경농산물 표시제도와 관련된 問題點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시제도와 품질인증 등 환경농산물 관리규정이 각각 相異한 法的 根據를 가지게 되었다. 이것은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실시되었던 유기농산물 표시제도가 「환경농업육성법」의 제정·시행에 따라, 후자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品質 認證은 일반재배 농산물 및 전통식품 등과 함께 전자의 법률에 의해 실시되고, 表示制度는 후자에 의해 실시될 예정이다. 이것은 품질인증과 표시제 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環境農業育 成 관련 政策((예컨대 현재 시행중인 증소농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사업과 환경농업지구 조성 사업 등)이 상호보완성과 연관성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육성 및 관리되는데 있어, 정책시행의 非效率性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둘째, 환경농산물 加工食品에 대한 表示規定이 미비되어 있다. 현재 국내산 유기농산물을 원료로한 가공품은 주로 단체를 통해 직거래로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輸入 有機農産物을 원료로한 加工食品(제과 및 유제품, 음료 등)에 유기농산물을 사용하였다는 표시와 광고를 하며 일반 소비자에게 대량 판매하고 있다. 그리하여 消費者는 유기식품으로 오인하고 있다. 또 원료로 사용된 수입 유기농산물이 일정한 기준에 의해 검증되었거나 인증된 바가 없어, 정말로 유기농산물을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법적 근거(보건복지부 소관)가 없는 실정이다. 소비자 보호와 消費者 主權의 보장 차원에서 환경농산물을 원료로한 가공품의 표시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환경친화적 包裝材 사용에 대한 規定이 미비되어 있다. 「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안)」 제9조 제2항을 보면 표시 내용과 표시방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 (환경농산물) 표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번호·생산자명 및 전화번호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포장재 또는 용기의 앞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물(散物) 또는 날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현물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풋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하여 포장재의 종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타나 있지 않다.

넷째, 表示 圖形의 기본적 형태가 제시되지 않아 다양한 도형이 남발됨으로써, 소비자의 混亂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아직은 환경농산물의 인증과 아울러 표시 도형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낮은 편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다양한 도형의 허용은 디자인이나 색상 등의 면에서 조

잡한 형태가 난무할 가능성이 있는 바, 환경농산물의 弘報에 역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IV. 環境農産物 品質認證 및 表示制度의 發展課題

지금까지 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제와 표시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 제도가 원활하게 실시되어 環境農産物의 生産 및 流通이 더욱 발전되기 위한 발전과제와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1. 品質認證制의 發展課題

환경농산물 품질인증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發展方向 및 課題는 다음과 같다.

첫째, 품질인증시 토양 및 수질검사와 성분분석 등을 대행할 공인시험 및 검사기관의 外部 委任範圍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시험검사의 위임기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民間研究所 또는 大學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특히 농산물검사소 지소의 통폐합으로 지역 생산자가 인증신청을 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는데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출장거리가 멀어졌다. 따라서 인근의 시험연구소나 대학에 시험검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첨부함으로써,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 대신에 農産物檢査所는 이러한 위임기관에 대한 實査 責任을 갖는다.

둘째, 농산물검사소의 품질관리를 위한 專門人力을 확충하고 통폐합된 機構를 원상 회복시켜야 한다. 최근 정부의 기구 및 인력감축 시책에 따라 각 도별로 설치되어 있던 농산물검사소 지소가 통폐합되었고 인력도 줄었다. 一般農産物의 품질인증은 199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고, 유기농산물 등 環境農産物의 품질인증은 1993년 12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또한 1998년 12월부터는 유기농산물 加工品의 품질인증제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를 담당할 專門人力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같은 식품의 품질관리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더욱 철저하게 실시되어야 하는 바, 현재의 기구와 인력으로는 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농산물검사소 제주지소를 원래대로 전남지소의 출장소로 하고, 각 도별 지소로 원상 회복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방안에 따라 機構를 재편한다고 해도 지소는 불과 2개밖에 증가되지 않는다.

셋째, 품질인증 업무를 민간단체에게 委託 또는 移讓할 때, 段階的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인증에 필요한 기본적인 試驗 및 檢査를 아웃소싱(out-sourcing) 형태로 운영하고 品質認證의 決定은 공적(公的) 기관이 하는 체계로 한다. 이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서 인증기관을 민간단체로 위탁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이때 인증기관이 인증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사전 실사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인증하고 있는가, 불법 및 위반사례는 없는가, 또 정기적인 설비 및 회계감사 등을 실시하는 등 구체적인 管理方案을 마련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증기관의 지정조건으로서, 적절한 전문가 및 기술 보유 정도와 검사원 및 인증활동 능력 보유, 인증 관련자들과의 경제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 등이 될 것이다. 물론 EU나 미국 등 일부 農業先進國에서는 민간단체(또는 민간단체+정부기관)가 자율적으로 품질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들의 비정부기구(NGO) 발전역사와 배경은 우리나라와 다르다. 특히 유럽과 미국의 유기농업 역사는 거의 70년 이상이나 되었으며, 환경농업정책의 틀과 중장기적인 계획수립 상태가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 많다.

넷째, 輸入 環境農産物의 품질인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경우, 국내의 품질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생산된 것으로서 '政府의 認定書'를 받은 생산물로 국한시키면 될 것이다. 농림부가 제정고시한 「유기농산물의 품질관리 요령」 제13조 제4항을 보면, '수입유기농산물은 수출국의 정부기관 또는 정부 공인기관이 발행한 법 제12조의 2(유기농산물의 표시) 및 규칙 제30조의 2 제2항(유기농산물의 품질기준 등)의 규정에 합당하게 작물의 재배 수확, 보관, 저장, 포장, 수송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비치한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기농산물의 표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요령」이 대체적인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바, 수출국의 확인서에 그치지 않고, 우리 '정부가 인정'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환경농업의 주된 경영방식인 輪作과 多品目 소량 생산의 경우, 동일한 경지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품목을 하나의 셋트(set)로 묶어 認證하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농가가 실시하고자 하는 윤작체계를 구성하는 품목을 한꺼번에 신청을 받아 토양 및 농업용수 등 포장조건과 그 주변 환경여건 등 생산기반에 대한 기본적인 시험과 검사를 우선 실시한다. 그리고 해마다 달라지는 작물에 대한 檢査는 해마다 실시하는 방법이다. 또한 다품목 소량생산을 하는 포장도 그곳에서 생산·출하하고자 하는 품목 전체를 신청받아 인증심사를 하는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여섯째,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조직 단위의 품질인증 신청에 대해 責任者의 임무를 確認者의 역할로 축소시켜야 한다. 인증조건 및 기준의 준수여부 등은 농산물검사소가 실시하고 있고 위반시의 책임은 해당 농가에게 있는 바, 책임자에게 과중한 임무를 부여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만일 자체 관리책임자를 검사소의 역할을 일부 위탁한 형태라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 또는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環境農業 民間團體는 품질인증 환경농산물의 안전성이 정부로부터 공인받았음을 널리 弘報하여야 한다. 품질인증의 經濟的 效果는 환경농산물의 고품질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고품질에 상응한 가격수취에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환경농업 육성정책의 실시로 인해 환경농산물의 생산이 증가할 전망이다. 일반소매기구를 통한 판매에 미리 대비하여야 한다. 이미 직영판매점이나 전문판매점을 통해 一般消費者에 대한 販賣도 진행되고 있다.

2. 表示制度의 發展課題

환경농산물 표시제의 發展課題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품질인증과 표시제도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바, 가능한 부분은 하나의 統合된 法令 또는 관련 법령하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우선, 농림부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農水産物品質管理法(案)」에 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과 수입 환경농산물의 검사(가공 원료용 포함) 및 표시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특히 수입 유기농산물을 원료로한 加工品의 원료함량 기준을 정하고, 표시 여부도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환경농업육성법에 규정되어 있는 환경농산물 품질기준과 환경농산물의 표시기준 및 방법과 相互 關聯性을 가지고 운용되어야 한다.

둘째, 輸入 有機農産物의 표시는 原產地 표시와 함께 표기하도록 하며, 품질인증제와 연계하여 수출국의 확인서에 대한 '우리 政府의 認定書 또는 承認書' 요건이 포함되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가능한 국내 환경농업의 보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안)」 제9조(환경농산물 표시방법)에 '…… 다만 수입농산물(가공제품의 원료를 포함)에 대한 환경농산물의 표시방법은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농림부장관이 國際規格 등을 참작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같은 법적 근거를 갖게 되면 수입 유기농산물에 대한 관리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기농산물 그 자체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없지만, 앞으로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는 日本의 유기농산물이나 中國의 녹색식품(green food)이 직접 소비용으로 수입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녹색식품은 「중국 녹색식품발전센터」라는 정부기관이 인증을 직접 관리·지도하는 정부주도형 생산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중국의 유기농산물 생산은 국내 수요의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향후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세계 유기농산물 시장을 겨냥한 무역전략적 성격이 강하다(日本 「農林金融」; 농림부, 1998. 8)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여 수입 유기농산물에 대한 관리규정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환경농산물을 원료로한 加工食品에 대한 表示方法은 담당부서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에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농림부가 1차 농림산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구조 자체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 즉, 농림부의 정책대상을 1차산물을 원료로한 대부분의 加工食品에까지 확대하여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일관되게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선진국의 식품관리 체계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향후 「유기농산물」의 용어가 아닌 「有機食品」이라는 표현과 개념으로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효율적이다.

넷째, 包裝資材는 가급적 생물분해성, 재생품, 재생 및 재활용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활동을 농업 내부의 문제로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環境問題 전체 차원에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환경농산물 표시를 위한 圖形으로서, 몇 가지의 기본 공통도형과 색상을 제시하여 일정한 범위내에서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그리고 團體名은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환경농산물의 표시는 허위 및 과대광고가 금지되어 있는 바, 간접적으로 품질인증과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환경농산물의 도형을 비교적 單純化함으로써, 소

비자들에게 그 이미지를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공통 도안의 국내 우수 사례로는 전통식품과 KS마크의 가공식품 도형을 들 수 있다.

V. 結 論

최근 정부의 環境農業育성과 관련된 정책의 적극적인 시행과 더불어 환경농산물의 생산량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가공원료나 직접 판매용의 유기농산물 수입이 증가추세에 있다. 따라서 환경농산물의 品質認證 및 表示制度는 소비자에 대한 신뢰성의 확보와 안전한 농산물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品質의 차별화를 통한 價格差別化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먼저 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제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즉, 품질인증을 위한 각종 시험 및 검사의 대학 및 연구소로 위임 확대, 농산물검사소의 품질관리를 위한 專門人力을 확충과 통폐합된 機構의 원상 회복, 품질인증 업무의 민간단체에 대한 단계적인(일시적이 아닌) 위탁 또는 이양 등이다. 또한 輪作과 多品目 소량 환경농산물 생산에 대한 품질인증 업무의 간소화, 環境農業 民間團體의 품질인증 환경농산물에 대한 弘報 強化 등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일반소매기구를 통한 환경농산물의 일반소비자에 대한 판매에 미리 대비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농산물 표시제도는 품질인증과 병행 실시되어야 하는 바, 가능한 부분은 하나의 統合 또는 관련 법령하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품질인증 업무와 「환경농업육성법」의 표시기준 및 방법이 相互 關聯성을 가지고 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輸入 有機農産物의 표시는 반드시 原産地 表示와 병행 표기하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제규격에 맞는 수출국의 확인서에 대한 '우리 政府의 認定書' 요건을 추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1차 환경농산물과 이를 원료로한 가공식품을 일관되게 관리하도록 「유기농산물」의 차원이 아닌 「有機食品」 개념으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또 包裝資材는 가급적 환경친화적인 생물분해성, 재생 및 재활용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농산물 표시를 위한 基本圖形을 정하여 일정한 범위내에서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환경농산물 품질인증품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參考文獻

- 국립농산물검사소, 『환경농산물 관리 및 품질인증제 추진방향』, 1998.
 —————, 『품질인증제 개선방향』, 1998.

- , 『유기농산물의 생산관리』, 1996.
- 김종숙,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의 필요성과 발전방향」, 『韓國有機農業學會誌』 제6권 제2호, 한국유기농업학회, 1998.6.
- 김 호, 「環境農業 育成政策의 問題點과 發展方向」, 『韓國有機農業學會誌』 제6권 제2호, 한국유기농업학회, 1998.6.
- 농림부, 『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시행규칙(안)』, 1998.
- , 『유기농산물의 품질관리요령』, 1998.
-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1997.
- , 『친환경농업 관련자료(I)』, 1998.
- , 『친환경농업 육성정책』, 1998.
-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환경농산물 품질관리 실태 및 개선방향』, 1998.
-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환경농업』 통권 제3호, 1997.